

경례(제17조 관련)

1. 후보생이 경례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가. 상급자 (대통령으로부터 지휘계통 상의 생활지도교수까지)
 - 나. 제복을 착용한 교직원(소방위 이상)
 - 다. 학교의 교수요원
2. 경례는 사복착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수경례를 원칙으로 하며, 거수경례 시 "안전"이라는 구호를 붙인다.
3. 경례는 서로 주목하여 상호 교환한다. 원거리 통과 시 가장 가까이 상호 통과하는 지점에서 한다.
4. 일정한 대형을 갖추어 인솔자가 인솔 시에는 인솔자가 대표로 경례한다.
5. 2인 이상이 삼삼오오로 보행 시에는 우측에서 보행하는 후보생이 경례한다.
6. 거수 경례 이외의 기타 예의 표시 방법
 - 가. 후보생은 실내 실외 또는 착모·탈모를 막론하고 거수경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거수경례가 곤란한 자세나 상황 시에는 목례나 구두로 예의를 표시한다.
 - 나. 땀걸음 시에도 경례할 대상자에게는 땀걸음을 하면서 거수경례를 한다.
7. 목례를 할 경우 또는 실내에서는 경례구호를 생략할 수 있다.
8. 생활실 및 휴식장소(교실 휴식시간 포함) 등에 상급자가 방문 시 경례요령
 - 가. 최초 인지한 후보생이 "쉬어", "안전" 구령과 함께 거수경례한다.
 - 나. 상급자의 답례와 허락이 있을 경우 "편히쉬어" 또는 "행동개시"의 구령에 따라 종전의 동작을 계속 진행한다.